

일본의 국민연금 재원 확보에 대한 논의

김명중 (일본경제연구센터 연구원)

■ 머리말

최근 일본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원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3분의 2가 가입자에 의한 보험료, 나머지 3분의 1이 국고 부담에 의해 충당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재원은 오는 2009년부터 국고 부담분이 2분의 1로 인상된다. 국고부담분의 인상은 원래 2000년 성립된 연금개혁법에 따라 소비세 인상 등을 통해 2004년까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2004년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인해 2009년까지로 연기되었다. 일본 정부가 국고 부담분을 2분의 1로 끌어올린 주된 이유는 연금보험료의 미납 및 체납자의 증가로 인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 붕괴될 상황에 처한 것과, 보험료의 미납과 체납에 따라 장래 연금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무연금자와 연금급여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연금자가 나오게 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야당인 민주당은 재원의 전액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최저보장 연금의 도입을 주장하는 등 국민연금의 재원 및 제도개선에 대한 여야 간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최근 일본에서의 국민연금제도와 그 재원 확보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민주당의 연금제도 개혁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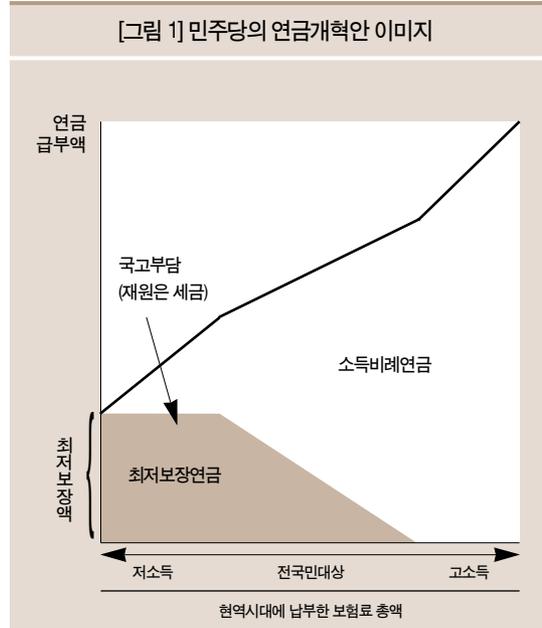
2004년 4월 8일 민주당은 연금제도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민주당이 제출한 연금제도 개혁안의 정식 명칭은 「노년기 등에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 연금제도의 근본적 개혁추진 법률안」으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적연금제도의 통합 : 현재 국민연금, 후생연금, 공제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금제도를 하나의 제도로 통합하여 공평하고 알기 쉬운 그리고 전직 등에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한다.
- 2층구조의 연금제도(그림 1) : 공적연금은 소득비례를 기준으로 보험료와 연금급여액을 산정하는 소득비례연금과,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회계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최저보장연금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저보장연금이란 소득비례연금이 일정액에 달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보충하기 위한 연금으로, 최저보장연금의 지급액은 고령자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최저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소득비례연금의 금액에 따라 감액된다. 재원은 연금목적세의 창설 등 전액 국고에서 지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보험료율 : 정부안(案)이 2017년까지 매년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에 비해, 민주당안(案)은 현재의 후생연금보험의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현상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피고용자의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사업주가 부담한다.
- 지급요건 : 공적연금의 지급개시 연령, 그 외 공적연금의 지급을 받기 위한 요건은 근로자의 정년에 관한 동향 및 고령자 상황 등을 감안하고, 고령자 등의 고용에 관한 시책과 연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소득 등 비례연금 : 각 연도의 소득비례연금의 지급 총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의 보험료 총액으로 충당한다(완전부과방식).
- 최저보장연금 : 최저보장연금은 소득 등 비례연금 지급액이 고령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수급권자에 지급한다. 최저보장연금의 지급액은 고령자 등이 생활의 기초적인 부분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며, 소득 등 비례연금

의 지급액 등에 따라 감액 지급된다. 최저 보장연금에 필요한 재원은 전액 국고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이행기간에 있어서 공적연금제도 : 기존 제도에 근거한 연금 지급에 대해서는 연금제도 개혁 이후에도 연금제도 개혁 실시전의 공적연금제도는 존속시킨다. 기존 제도에 바탕을 둔 연금 지급액은 연금제도 개혁 실시 전의 공적연금 지급액을 기본으로 한다.
- 국고 부담의 자원 : 공적연금의 재원을 충실히 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 그리고 공적연금과 관련된 세제 개혁을 검토, 최저보장연금의 지급은 국고를 원칙으로 하며, 국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목적세의 창설을 검토한다.
- 개인정보의 확인 : 공적연금제도의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납부 실적, 소득 등 비례연금의 장래 수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설치한다.

이와 같은 민주당의 연금개혁안은 연금제도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점에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최근 들어 구체적인 재원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1층 부분인 국민연금과 2층 부분인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의 통합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연금제도 통합을 위한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점과, 자영업자의 보험료가 현재보다 증가하여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시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료 : 민주당 홈페이지, 「民主黨の年金抜本改革」, http://www.dpj.or.jp/news/files/BOX_KRO0006.pdf

■ 재원에 대한 논의¹⁾

민주당의 연금개혁안처럼 최저보장연금 또는 기초연금의 재원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최근 자주 거론되고 있다.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이 논의되는 이유는 ① 저출산 고령화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장래 경제활동인구와 피보험자가 줄어드는 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금급여를 수령하는 고령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점(연금 재정 고갈의 문제점), ② 현재의 보험료 방식으로는 자영업자와 프리터 등이 대상인 국민연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납과 미가입 문제가 발생하여 전국민연금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지고, 장래 연금급여 대상으로부터 제외되는 무연금자와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급여를 받게 되는 저연금자가 발생할 수 있는 점, ③ 전업주부를 포함한 일정 소득 이하의 샐러리맨과 공무원(제2호 피보험자)의 배우자의 경우 제3호 피보험자²⁾로 지정되어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급여 대상이 되는 반면, 자영업자의 배우자는 소득이 없어도 본인의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급여 대상자로서 지정되는 불공평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세목 중에서도 특히 재원의 후보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소비세로, 소비세율의 인상에 의해 기초연금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다치바나키(2005)³⁾는 일본의 공적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한정하고 그 재원을 전액 누진소비세로 충당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는 「가계조사」의 세대주 연령 65세 이상세대의 필수 생계비를 바탕으로 부부세대는 월 17만 엔, 단신자 세대는 월 9만 엔이 타당하며, 이 금액을 전 고령자에게 지불하기 위해서는 소비세율을 15%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가토(2006)⁴⁾는

1) 金明中, 「消費稅財源に最低保障年金を一無年金・低年金の解消を目指す」(2007), 『官の再設計』, 日本経済研究センター, pp.45~61에서 일부 인용.

2) 제1호 피보험자 : 자영업자, 학생 등. 제2호 피보험자 : 후생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샐러리맨과 공제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공무원 등. 제3호 피보험자 : 후생연금과 공제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제2호 피보험자)의 배우자로 연령이 20세 이상 60세 미만, 연간 수입이 130만 엔 미만인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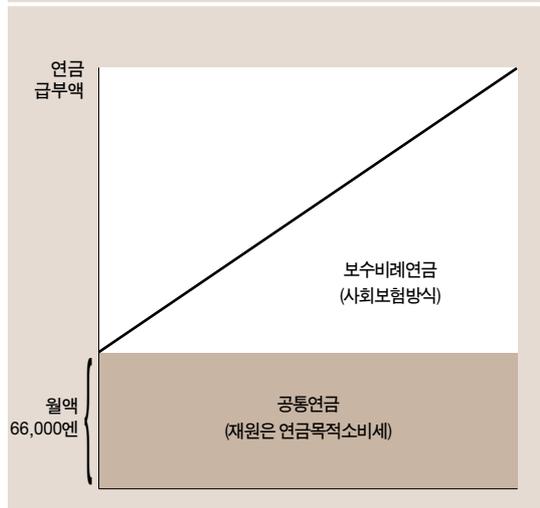
3) 橋木俊詔(2005), 『消費稅15%による年金改革』, 東洋経済新報社.

4) 加藤久和(2006), 「基礎年金の負担: 税か保険料か?」,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 Discussion Paper No. 2006. 01.

2050년까지의 거시 계량모델을 이용하여 기초연금을 전액 소비세로 총당하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2025년까지 필요한 소비세율의 상승폭은 5.75% 정도이지만 기초연금 급여액 확대와 동반하여 2050년에는 6.59%의 소비세율이 필요하며, 재정적자 해소 등 그 외로 필요한 세수를 고려하면 최종소비세율은 16.6% 정도가 적당하다고 추계하였다. 단, 전 고령자에 일반회계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초연금이 지급될 경우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생활보호제도의 급여액이 감소하여, 실제 소비세 인상폭은 상기 추계에 비해 조금 감소할 전망이다.

일본경제신문사는 2007년 9월 연금제도개혁연구회를 발족하여 ① 사회보험방식의 문제점을 개선, ② 전 국민연금을 통합하고 최저보장 부분의 재원으로 일반회계의 세금을 사용, ③ 기초연금의 재원을 세금으로 조달하고 저연금자에게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충연금을 지급, ④ 기초연금 전액을 소비세를 재원으로 하는 조세방식으로 이행한다고 하는 4가지 개혁안을 검토한 끝에 네 번째 개혁안인 기초연금의 조세방식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결론지었다. 연구회의 제안에 의한 새로운 연금의 가치는 '공통연금'으로 일본에 10년 동안 거주했을 경우 수급이 가능하며, 월 급여액은 만액의 경우 6만 6천 엔으로 현재의 기초연금과 동일한 수준이다(그림 2). 이를 위한 재원(12조 엔)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세를 현재보다 5% 정도 인상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소비세로 기초연금의 재원을 총당함에 따라 현재 매월 피보험자가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2008년 3월 현재 월 14,100엔) 부담은 없어진다. 연구회는 조세방식의 이점으로 미납 문제가 해결된다는 점, 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할 수 있다는 점, 소득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정액을 납부하는 국민연금보다 소비액의 일정 비율을 부담케 하는 소비세가 저소득층의 부담을 가볍게 한다는 점, 사회보

[그림 2] 연금제도개혁연구회가 제안한 연금제도안의 이미지



자료 : 일본경제신문 조간 2008년 1월 7일, 「基礎年金, 全額消費稅で」

협정의 징수 부문이 크게 축소되어 연금에 관한 정부의 집행체제가 효율화된다는 점을 들었다.

■ 그 외 재원에 대한 논의

소득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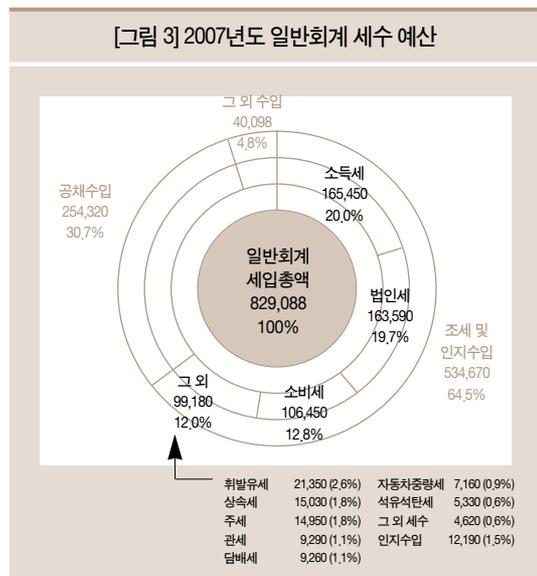
수직적인 소득재분배를 위해 소득세의 이용도 검토되고 있는데,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실시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속세

젠쇼(2006)⁵⁾는 고소득자에 대한 연금목적 상속세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는데, 일본의 상속세가 10%에서 50%의 누진상속세를 적용하고 있는 데에 비해 스위스, 말레이시아, 태국의 상속세가 0%이고, 캐나다(1972년), 오스트리아(1977년), 뉴질랜드(1997년), 홍콩(2006년), 싱가포르(2008년), 미국(2010년 폐지 예정)이 이미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속세의 추가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림 3]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소비세와 소득세에 비해 상속세가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1.8%(2007년 약

[그림 3] 2007년도 일반회계 세수 예산



자료 : 재무성홈페이지, 「平成19年度一般會計歳出入の内訳(予算)」, <http://www.mof.go.jp/jouhou/syuzei/siryuu/002.htm>

1.5조 엔)로 상속세만으로는 최저보장연금 또는 기초연금의 전액을 충당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도로특정재원을 사회보장재원으로

일본 공산당은 도로특정재원을 일반 재원화하여 사회보장 및 복지, 생활밀착형 공공사업에도 사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노세(2008)⁶⁾도 도로특정재원의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고, 남은 재원을 일반 재원화하여 복지와 환경대책, 그리고 800조 엔에 이르는 채무의 일부를 상환하자고 주장한다. 휘발유세에 대한 잠정세율은 도로정비5개년계획(제7차)에 의해 필요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1974년에 도입되었다.⁷⁾ 이후 도로정비계획이 책정될 때마다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 결정을 거쳐 5년마다 잠정세율을 갱신하였다. 현재 1리터당 150엔 전후하는 가솔린 가격에는 53.8엔⁸⁾의 가솔린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본래 세금은 1리터당 28.7엔으로 나머지 25.1엔은 일시적인 조치를 위한 잠정세율에 해당한다. 이 잠정세율의 기한이 2008년 3월 31일까지이므로 2007년 12월 정부 및 여당은 도로특정재원의 수정안을 정리하여 향후 10년간의 도로중기계획⁹⁾에 필요한 비용을 59조 엔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¹⁰⁾을 세웠으며,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잠정세율을 현재와 같이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¹¹⁾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사정 및 지방경제의 활력화를 이유로 잠정세율의

5) 權丈善一(2006), 『医療年金問題の考え方-再分配政策の政治経済学 III』, 慶應義塾大學出版会

6) 猪瀬直樹(2008), 「道路特定財源でつくった宿舎の家賃, 東京23区で1万円以下も」, Nikkei BP Net, 2008년 2월 13일.

7) 제1차 오일쇼크에 의한 가솔린의 소비 억제와 환경에 대한 배려도 도입의 한 목적.

8) 정부의 세수입이 되는 휘발유세 48.6엔과 전액을 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지방도로세 5.2엔.

9) 가교의 점검 및 보수, 통학로의 정비 등.

10) 교량 수선과 상습 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사업비 등에 필요하다고 주장, 기존 5년간 38조엔에서 축소됨.

11) 2007년도 도로특정재원으로서 거두어들인 세수는 총 5조 6천억 엔.

유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가솔린세의 잠정세율이 필요 없는 도로의 신설, 낙하산 인사, 부당지출 등 계획성 없이 세금이 사용되어 온 문제점과, 일명 도로족 위원의 표발을 형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온 점을 강조하면서 잠정세율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실제 이 잠정세율은 3월 31일을 기한으로 실효성이 없어졌으며, 현재 휘발유 1리터당 최대 25엔 까지 가격이 내려간 상태이다. 잠정세율에 의한 세수 감소는 약 2조 6천억 엔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는 소비세율 약 1%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는 일본경제신문이 기초연금의 필요재원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소비세 인상폭인 5%와 다치바나키의 10%, 그리고 가토의 11.6%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어 잠정세율분만으로 연금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 등 관련 단체의 동의를 얻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급여환불제도(클로백 제도)

다카야마(2004)와 겐쥬(2004)는 캐나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급여환불제도(클로백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전액 세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정액의 노령소득보장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연금급여 이외의 소득이 규정을 넘는 고소득자인 경우 일단 지급한 노령소득 보장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국가에 환불하는 급여환불(claw back)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연금재정의 적자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1989년에 보수당 정권에 의해 도입되었는데, 2008년 기준으로 연간 가처분소득이 64,718달러를 넘을 경우 소득이 1달러 증가할 때마다 15센트를 환불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처분소득이 104,903달러에 달하면 전액 환불하도록 구성되어 있다.¹²⁾

12) <http://www.hrsdc.gc.ca/en/isp/pub/factsheets/oasrepay.shtml>, <http://www1.servicecanada.gc.ca/en/isp/oas/oasrates.shtml>

조세방식에 대한 반론

조세방식에 의한 기초연금제도의 실시를 반대하는 입장으로서 호리(2005)¹³⁾, 겐죠(2004)¹⁴⁾를 들 수 있다. 호리는 보험료 방식의 목적이 확실한 점과 현재의 심각한 정부의 재정상황으로는 조세를 증가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주장하며 세제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겐죠는 피보험자로서 이미 보험료를 납부한 고령자에게 있어서 조세방식은 이중 부담을 지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그 외 연금제도에 대한 논의

2004년 연금개정에 대한 평가

2004년에 개정된 현행 연금제도는 전문가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우선 살펴보기로 하자. 동 개정은 장래 급여와 부담의 팽창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의 보험료를 고정하고,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고령자수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자동적으로 급여액을 억제하는 거시경제연동¹⁵⁾을 채택하였다. 오구치(2005)¹⁶⁾는 공적연금 규모의 축소는 장래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과 그 이후 세대에 있어서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였다. 단 청년층에 비해 일반적

13) 堀 勝洋(2005), 『年金の誤解－無責任な年金批判を斬る』, 東洋経済新報社.

14) 權丈善一(2004), 『年金改革と積極的社会保障政策－再分配政策の政治経済学Ⅱ』, 慶應義塾大學出版會.

15) 거시경제 연동은 고령사회가 급속히 진전되는 가운데 장래 현역 세대보다 연금급여를 수급하는 세대가 많아짐으로 인해 연금재정이 고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력 저하에 의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상승 등 거시경제적인 요소를 반영하여 연금급여수준을 조정하는 조치이다.

16) 小口登良ほか(2005), 「公的年金財政の評価」, 『社会保障財政の全体像と改革の方向』, 日本経済研究センター.

으로 고령자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순응하기 어려워, 고령자에 리스크를 전가하는 측면을 가진 거시경제연동은 고령자에게는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호리(2005)¹⁷⁾는 연금급여 수준의 인하와 보험료 인상을 자동적으로 실행하는 수법의 도입은 획기적인 방법으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과감히 실행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켄조(2004)¹⁸⁾는 거시경제연동의 도입과 보험료율의 고정화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동 개혁이 피보험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그 운용 이익에 의해 급여액을 결정하는 확정기여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최저한을 설정(소득대체율을 50%로 설정)한 것은 이론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하였다.

공적연금제도의 민영화

공적연금의 민영화는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오시오(1998)¹⁹⁾를 들 수 있다. 그는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의 보수비례부분인 2층부분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여 개인 단위의 연금급여 계산을 기준으로 하는 적립방식으로 이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오기나(1998)²⁰⁾는 민영화는 노동 인센티브를 끌어올려 적립금이 보다 유망한 분야에 사용되어지는 것에 의해 거시경제성장을 활성화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주장하였다. 또한 제도 이행기에 부딪히게 되는 현역세대의 이중 부담만을 걱정하여 민영화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민영화를 반대하는 주장으로는 다카야마(1997)²¹⁾를 들 수 있는데 그는 공적 연금을 정액의 기초연금만으로 한정하고 2층 부분의 임금비례 부분을 민영화하는 개혁안에 대해서 ① 민영화 실시에 따라 이중 부담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 ② 민영화된 연금은 확정기여형을 중

17) 堀 勝洋(2005), 『年金の誤解－無責任な年金批判を斬る』, 東洋経済新報社.

18) 權丈善一(2004), 『年金改革と積極的社会保障政策－再分配政策の政治経済学Ⅱ』, 慶應義塾大学出版会.

19) 小堀隆士(1998), 『年金民営化への構想』, 日本経済新聞社.

20) 翁百合(1998), 「金融市場の側面からみた公的年金民営化の検討」, 日本總研 Japan Research Review 1998年 6月号.

21) 高山憲之(1997), 「年金特集若者を絶望させない年金改革－性急な制度変更論の落とし穴」, 『論座』 1997年 12月.

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노후생활의 안정이 반드시 보장되지 않는 점, ③ 거액의 자금이 금융시장에 유입됨에 따라 금리가 낮아지게 되는 점, ④ 민영화에 의한 저축 증가가 일본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은 점, ⑤관리비용이 증가할 염려가 있는 점의 의문점을 제시하며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다.

파트타임 근로자의 연금적용 문제²²⁾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파트타임 근로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파트타임 근로자의 후생연금 가입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현 제도 하에서 파트타임 근로자가 후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정사원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 조건을 20시간 이상으로 완화하여 후생연금의 대상자를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한 후생연금의 적용 확대 문제는 1998년의 연금심의회 이후 계속해서 논의되어 왔으며, 2004년 연금제도 개정시에 사회보장심의회 연금부회에서 “기본적으로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후생연금의 적용 및 확대를 실시해야한다”고 제안되었다. 이후 일본 정부는 비정규근로자와 정규근로자의 균등한 처우를 확보하고 비정규근로자의 정규근로자로의 전환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파트타임 노동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회보장심의회 연금부회에 「파트타임 근로자의 후생연금 적용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한 후생연금의 적용확대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었다. 하지만 파트타임 근로자의 고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통업과 외식산업 등의 반대와 파트타임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으나 연간 소득이 130만 엔 이하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봉급장이 세대의 주부 등이 실수령액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좀처럼 해결책을 못 찾고 있는 상태이다.

22) 김명중(2007), 「일본의 파트타임 근로자의 후생연금 적용확대를 위한 논의」,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5(4), pp.26~39에서 일부 인용.

■ 결론

연금과 의료 등 사회보장제도를 지속가능한 제도로 유지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인상하는 조치는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보장제도가 성숙기에 들어선 선진국에서는 이미 한계에 달했다고 볼 수 있다. 일본도 2017년까지는 공적연금의 보험료를 인상하고 그 이후로는 보험료를 고정시키는 방식과 기존의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제도를 개정함으로써 인해 저출산 고령화 등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고령자간의 소득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최저보장연금 또는 기초연금의 도입이다. 두 제도의 차이점으로는 최저보장연금이 소득비례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최저 한도의 소득이 보장되지 못하는 고령자에 대하여 최저 한도의 소득을 보완하는 것에 비해, 기초 연금은 전 고령자를 대상으로 최저 한도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그 위에 소득비례연금에 의한 연금을 지급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두 제도의 공통점으로는 일반회계에 의한 세금을 중심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으로, 현 시점에서는 소비세율 인상에 의한 재원 확보가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연금기록 누락 문제²³⁾와 같이 제도의 변환기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반드시 잠재하고 있으며, 현재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시점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 일본의 연금기록 누락문제의 해결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지 또한 새로운 연금 재원이 성공적으로 도입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KLI**

23) 김명중(2008), 「일본의 연금기록 누락 문제와 정부대책」,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6(2), pp.81~90에서 일부 인용.